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합 병 하 려 는 법 인	갑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을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 로 설립되는 법인	⑨ 상 호 (명 칭)				
	⑩ 성명(대표자)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전화:)			
⑬ 합병하려는 법인이 경영 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					
⑭ 합 병 방 법 의 조 건					
⑮ 합 병 예 정 일					
⑯ 사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뒤 쪽)

※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